

문일 행정법 강의계획서

“예비순환부터 행정법 내용을 이해시키고

중요 쟁점을 적용한 사례를 풀고

복습시험을 보는 진짜 논문형 시험대비 최고의 행정법 강의 ”

■ ■ 담 당 문 일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행정법원 실무연수

現) 한림법학원 5급 행정 행정법 전임

現)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

■ ■ 강의일정 2024년 3/4(월) ~ 3/30(토), 총 24회 ※월~토 강의

■ ■ 시 간 [오후 실강반] 13:40~17:10

[익일 오전영상반] 8:40~12:10

■ ■ 강의교재 [주교재] 쓸 수 있는 테마행정법(문일 저, 제본집 무료제공) +
2025년 대비 행변사기 행정법 사례연습(서점구매)

[부교재] 전자철관 PPT 판서노트 (매회 프린트 제공) + 복습시험 설문 +
특수모범답안 (격일로 복습시험이 있는 날 프린트 제공)

■ ■ 무료입문 특강 아래 입문 무료특강을 예비순환 시작 전에 순서대로 듣고 오시면 예비순환부터 자신감이 생겨
납니다. 행정법 용어의 어색함을 깨뜨린 후 행정법 산책을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강의입니다.

▶ 5급 공채 답안에 쓰는 행정법 용어 해설

2024. 2. 23.(금) 14:00

▶ 행정법 산책

2024. 2. 26.(월) 14:00

※ 홈페이지 무료특강에서 무료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순환 시작 전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 강의특징

1. 논문형 시험은 많이 써 본 사람이 이깁니다.
2. 예비순환부터 불필요한 교수님의 기본서를 배제하고 핵심요약서와 사례집으로 실전 대비
훈련을 합니다.
3. 총 24회의 과정 중 12회의 복습시험이 진행 됨으로써 시작하는 단계부터 쓰는 공부의 중요
성을 알려 드립니다.
4. 암기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스스로 뼈 속까지 이해한 내용을 정말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 ■ 강의진행

1. 흐릿한 판서, 알아보기 어려운 판서가 아니라 전자칠판 및 주요내용을 도식화하여 시각적으로 선명한 내용 전달과 복습하기 좋은 판서노트를 제공합니다.
2. 예비순환이라는 순환명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이해시켜 드립니다. 편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3. 당일 배운 내용이 언제, 어느 시험에서 기출되었는지를 행변사기 사례집을 통하여 확인하여 정말 쓸 수 있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4. 격일로 진행되는 복습시험을 통해서 답안 작성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의 틀까지 습득하게 됩니다.

진도별 강의 내용(진도별 핵심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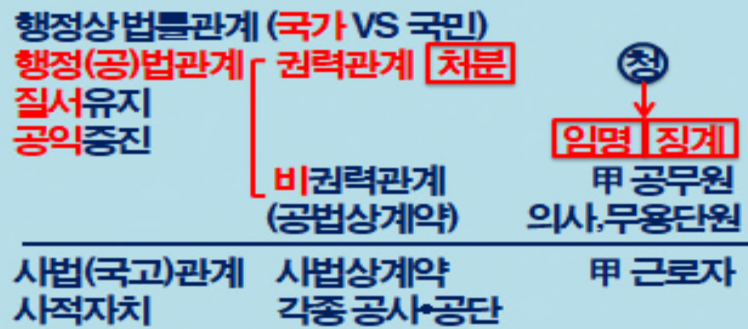
강의 회차	날짜	강의 내용	복습시험
■ 제 1 회	3/4(월)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실질적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 2 회	3/5(화)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사법, 특별행정법관계	★
■ 제 3 회	3/6(수)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 제 4 회	3/7(목)	행정행위	★
■ 제 5 회	3/8(금)	부관부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 제 6 회	3/9(토)	행정행위의 특징(공정력),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VS취소	★
■ 제 7 회	3/11(월)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및 실효,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 제 8 회	3/12(화)	행정지도, 행정절차	★
■ 제 9 회	3/13(수)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 제 10 회	3/14(목)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벌	★
■ 제 11 회	3/15(금)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 제 12 회	3/16(토)	행정상 손해배상(I)	★
■ 제 13 회	3/18(월)	행정상 손해배상(II)	
■ 제 14 회	3/19(화)	행정상 손실보상	★
■ 제 15 회	3/20(수)	행정소송 개관, 통치행위	
■ 제 16 회	3/21(목)	취소소송(I)	★
■ 제 17 회	3/22(금)	취소소송(II)	
■ 제 18 회	3/23(토)	취소소송(III)	★
■ 제 19 회	3/25(월)	취소소송(IV)	
■ 제 20 회	3/26(화)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
■ 제 21 회	3/27(수)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 제 22 회	3/28(목)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
■ 제 23 회	3/29(금)	지방자치법	
■ 제 24 회	3/30(토)	공용부담법, 지역개발행정법, 환경행정법, 재무행정법	★

※ 수업 진행별로 진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습은 불필요하고 **복습만 철저히 하세요.**

〈특수모범답안〉

<p>[자기구속의 원칙] ★ 병(평)신 ‘자기’가 재동이 적선 했어</p>
<p>I. 의의</p>
<p>행정청이 재량영역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현재의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도록 스스로 구속을 받는다는 원</p>
<p>II. 인정근거</p>
<p>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있게 되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판시하였다.</p>
<p>III. 요건</p>
<p>1. 재량영역</p>
<p>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규에 구속되는 것이지 행정청인 자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p>
<p>2. 동일한 사안</p>
<p>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재량영역의 특성상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행정청은 다른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p>
<p>3. 적법한 관행</p>
<p>관행은 적법하여야 한다. 만약 위법한 관행에 대한 자기구속의 요구는 불법의 평등요구와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p>
<p>4.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p>
<p>1) 학설</p>
<p>긍정설 VS 부정설</p>

〈전자철판 PPT 판서노트〉



T.9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P. 57

1.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 명시&묵시O, 부작위X착오X
2. 보호가치 있는 신뢰(귀책사유X)
3. 신뢰에 기인한 처리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